

행정자치부

시정요구

제 목 기록물 이관업무 소홀

기 관 명 사상구

내 용

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, 공공기관은 기록물을 처리과에서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내에서 보관한 후 기록물철 단위로 관할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,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에는 이관대상 기록물철을 단위과제별로 구분하여 보존상자에 넣은 후 이관목록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, 업무에 수시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존기간의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내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.

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록관은 그 공공기관 및 소속기관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원본 및 목록의 일치 여부, 물리적 상태 확인 등의 검수절차를 거쳐야 한다.

그런데도 부산광역시 사상구(○○과)에서는 처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관시기가 경과한 기록물의 이관을 위하여 위 관서 ○○○○국(기록관)에서 ‘2014년 생산 기록물 이관계획’(○○○○과-0000호, 2014. 0. 0.), ‘2015년 생산 비전자

기록물 이관계획'(○○○○과-00000호, 2015. 0. 00)을 수립하여 이관대상 기록물 목록을 작성하고 지정된 날짜에 이관을 실시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정기 이관 수행시 정당한 사유없이 전체 대상량 173권 중 43권만(24.8%)을 이관하였고, 2015년도 정기 이관 수행시 185권 이관 대상량 전체를 미이관하고 별도의 이관시기 연장에 관한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채, 자체 보관 서고 또는 캐비닛 등에 중요기록물을 방치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사상구청장은

[시정]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처리과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기록관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